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익사업에 철도운수사업 추가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확대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595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익사업에 철도운수사업 추가(안 제7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3
2. 필수유지업무의 요건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7

I. 제안경위

2023년 11월 24일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3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그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은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사업 등 공중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간산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철도의 화물운송은 제외하고 있음. 이에 화물열차를 운행·관리하는 경우 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철도의 화물 수송 분담률은 2020년 기준 1.4%에 해당하나, 철도가 수송하는 화물인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석탄 등은 산업활동 및 국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운송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한편, 철도, 항공과 같이 업무의 운영일정과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폐지뿐만 아니라 업무의 지연 역시 공중의 일상을

저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운행표에 따른 정시운행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하였던 정차시간·규정속도를 준수한 운행(소위 “준법투쟁”)에 따른 운송량 감소 사례를 들 수 있음.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연 및 정지·폐지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7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공익사업에 철도운수사업 추가(안 제7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철도운수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71條(公益事業의 범위등) ① 이 法에서 “公益事業”이라 함은 公 衆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 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各號의 사업을 말한다.	第71條(公益事業의 범위등) ① -- ----- ----- ----- ----- -----.
1. <u>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 공운수사업</u>	1. <u>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u>
<신 설>	1의2. <u>항공운수사업 및 철도운수 사업</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1조제1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각항의 각호는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음.

<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비교 >

구 분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정의	공중의 <u>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u> 이 있거나 <u>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u> 사업	<u>공익사업으로서</u>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u>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u> 하거나 <u>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u> 하고 그 <u>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u> 사업
내용	1. <u>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u> 및 항공운수사업 2. <u>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u> 3. <u>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u> 및 혈액공급사업 4. <u>은행 및 조폐사업</u> 5. <u>방송 및 통신사업</u>	1. <u>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u> 및 항공운수사업 2. <u>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u> 3. <u>병원사업</u> 및 혈액공급사업 4. <u>한국은행사업</u> 5. <u>통신사업</u>
효과	- 노동쟁의 조정의 우선적 취급 (제51조) - 조정기간 특례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제54조) - 공익사업 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설치(제72조) - 긴급조정(제76조)	- 필수공익사업 중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 (제42조의2)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자 채용 등 금지 적용 제외(제43조)

따라서 현행법 체계상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결정되는 구조임. 그런데 현행법 제71조제1항제1호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철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이에 따르면 철도사업의 경우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철도사업 중 철도차량을 이용한 여객운송은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이며, 그 외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철도건설·터미널 운영업 등은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한편,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시멘트 화물열차 운행 횟수 급감으로 시멘트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¹⁾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크므로 화물열차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철도운수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열차 뿐 아니라 화물열차 운행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열차의 운행이 공익사업 뿐 아니라 필수공익사

1) 동아일보, 「철도 파업에 시멘트 열차 운송 80% 급감…장기화시 ‘우려」, 2023.9.15.

2) 서울신문, 「파업때마다 ‘혼란’…화물열차·열차승무 필수유지업무 지정 ‘논란」, 2023.10.2.

업에도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화물열차 운행이 공익사업의 요건인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포섭되는지 여부 뿐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의 요건인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①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②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③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에 포섭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화물열차 운행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2020년 기준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톤 기준 1.4%, 톤-km 기준 3.9%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송량과 분담률이 2017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철도 수송량 및 수송 분담률 >

(단위 : 백만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총 물동량	2,029	2,036	1,984	1,927	-	△1.7
철도 수송량	32	31	29	26	27	△4.2
분담률(톤)	1.6	1.5	1.4	1.4	-	△4.4
분담률(톤-km)	4.5	4.4	4.2	3.9	-	△4.7

자료 : 국토교통부,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2022-2026)」, 2023.4.

다만, 화물철도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등 고중량 품목을 집중적으로 수송하고 있으며,³⁾ 특히 시멘트의 경우 생산량의 20%를 철도로

3) 2022년 기준 철도의 화물수송실적은 약 2,362만톤으로, 이 중 컨테이너가 약 843만톤으로 35.7%를, 시멘트가 약 899만톤으로 38.1%를, 철강이 약 193만톤으로 8.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한국철도공사, 『2022 철도통계연보』, 2023)

수송하고 있다는 점⁴⁾을 고려할 때 특정 품목의 경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한 영향력이 클 수 있겠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열차 운행의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의 영향력, 그 업무의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고용노동부는 철도화물 수송은 화물 분담률은 낮으나 수송품목은 국민경제,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등 공적수송의 기능이 강하고, 특히 일부품목은 중량·크기로 인해 대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필수유지업무의 요건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을 현행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로 인해 현행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려는 것임.

4) 국토교통부,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2022-2026)」, 2023.4.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u>정지되거나 폐지</u> 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행위의 제한) ① ----- ----- ----- -----지연되거나 <u>정지·폐지</u> ----- ----- ----- -----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현행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현행법은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⁵⁾”으로 정의하고 필수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

공익사업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수공익사업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도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를 정하여 해당 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⁶⁾

필수유지업무는 현행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하는 사업 중 ①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②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필수공익사업별로 규정하고 있음.⁷⁾

한편,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음.⁸⁾ 다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은

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7)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노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8)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및 희망연대노동조합,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9.8.21, 4면.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과 같은 중대한 법익으로서 그 침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복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쟁의권의 사후적 제한만으로는 그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자율적 협정을 통해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권 제한이 사전제한이라 하더라도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한 바 있음.⁹⁾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필수유지업무의 요건 중 ①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를 “지연되거나 정지·폐지”되는 경우로 변경하면서, ②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즉,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를 정함에 있어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가정하였을 때 그 결과가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일상생활 뿐만

9)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 전원재판부

아니라 국민경제를 저해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 정하게 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본권인 쟁의권이 제한되는바 쟁의권 행사를 통해 제한되는 국민 다수의 공공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쟁의권이 사전적으로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에서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과 쟁의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정’¹⁰⁾ 제도에는 해당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관련한 공익의 보호가치와 국민경제와 관련한 공익의 보호가치를 달리 보아 근로자의 쟁의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업무의 지연을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에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업무’는 현행법의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에 공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¹¹⁾을 감안하여 개정의 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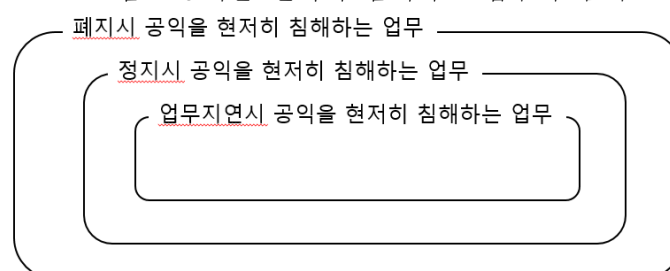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①근로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업무의 ‘지연’ 개념이 모호하고 원인도 다양할 수 있어 정상적인 업무 저해 여부 판단이 어려우며, ②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는 현행법에서 긴급조정제도를 통해 심각한 공익 침해 발생을 대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요건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5

- 11) 약한 수준의 쟁의행위인 ‘업무의 지연’에 따라 공익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업무는 그에 비하여 강한 수준의 쟁의행위인 ‘업무의 정지·폐지’가 있는 경우 당연히 공익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림>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업무의 범위



참고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노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1)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다. 항공기 조종 업무
 - 라. 객실승무 업무
 -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Depot Maintenance, 대규모 정비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여 수행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는 제외한다] 업무
 -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 나. 송전·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 7)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 9. 한국은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 나. 「한국은행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 10.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
 -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